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994. 9. 27.

교육사회위원회

1. 제 출 자 : 충청북도 교육감

2. 제출 및 회부일자 :

○ 제 출 일 자 : 1994년 9월 17일

○ 회 부 일 자 : 1994년 9월 17일

3. 제 안 이 유 :

○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4,317호 '94. 7. 6)으로 지방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 요 골 자

○ 국내여비 구분중 식탁료 삭제 (안 제5조제1항)

○ 일비 지급기준 조정 (안 제6조)

- 일비 (1인당) : 50,000원 → 60,000원

○ 국내여비 지급기준 조정 (안 별표 1)

- 현지교통비 (1일당) : 4,500원 또는 5,000원 → 6,500원

- 숙박비 (1야당) : 15,500원 또는 17,000원 → 20,700원

- 식비 (1일당) : 9,500원 또는 11,000원 → 11,000원

- 식탁료 (1야당) : 800원 → 식탁료 삭제

○ 국외여비 지급기준 조정 (안 별표 2)

- 숙 박 비 (1야당) : 40불 ~ 133불 → 62불 ~ 147불
- 식 비 (1일당) : 33불 ~ 58불 → 49불 ~ 133불
- 새로 수교된 국가 (16개국)에 대한 국외여비지급 등급 지정

5. 검토 의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4,317호 '94. 7. 6)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동시행령을 준용토록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교육위원의 일비 및 여비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조례안 및 참고자료 : " 별 첨 "